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2. 12. 1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엄혜숙)

가. 제안이유

-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2012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치매관리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 근거법령 변경(제1조)
 - 기존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로 변경
-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제4조)
 - 계약기간 연장 조항인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삭제
-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조항 신설(제4조)
 - 수탁기관 선정기준·방법 등 명시(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규정 명시(여성위원 40% 이상, 위원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
- 협약내용 공증이행 조항 신설(제4조)
-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제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2011.8.4)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민간위탁운영의 관리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치매관리법」이 제정(2011. 8. 4 제정, 2012. 2. 5 시행)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자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로 변경하고
 - 안 제4조제3항에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수탁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4조제4항과 제5항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과 협약내용을 공증 이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
 -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의거,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함

- 안 제6조제5항에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민간위탁 관리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9 호
----------	---------

제출연월일 : 2012.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2012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영등포구치매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 근거법령 변경(제1조)

- 기존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로 변경

나.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제4조)

- 계약기간 연장 조항인“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조항 삭제

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조항 신설(제4조)

- 수탁기관 선정기준·방법 등 명시(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규정 명시(여성위원 40% 이상, 위원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

라. 협약내용 공증이행 조항 신설(제4조)

마.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제6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10. 8 ~ 10. 29)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의견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심사여부 : 심사완료 및 검토결과 반영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및 「노인복지법」 제29조”를 “,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보호자에 대한”을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치매 환자에 대한”을 “치매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2.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간,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의 의무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시 위탁”을 “재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를 “수탁자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않은 때”를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체”를 “모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을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평 가 부 문		부문별 평가항목		항목배점
기술 능력 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 (30점)		· 기술인력, 기구, 시설 및 장비 수준 · 주요사업실적(수행경험) · 관련분야 클리닉 운영 수준	30점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계획서 내 용	· 사업정책의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독창성 등 · 특화된 사업추진 및 운영 마인드	30점
		지역사회 연 계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계획 · 기타 연계 가능한 자원 발굴 계획	20점
		기 타	· 사업에 대한 열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인력관리 방안 등	20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7조----- ----- -----.
제3조(사업) 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략) 4. 치매환자 및 그 <u>보호자에 대한</u> 상담 5. 재택 <u>치매환자에 대한</u> 방문·관리 6.·7. (생략)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u>관리에 관하여</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사업)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보호자</u> ---- 5. ----- <u>치매환자</u> ----- 6.·7. (현행과 같음) 8. ----- ----- <u>관리에</u> ----- -----
제4조(위탁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	제4조(위탁운영) ① ----- ----- ----- ----- <u>인정하면</u> ---- -----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자”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수탁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2.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제5조에 따른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u><신 설></u>	척된다. 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간,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의 의무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 ----- ----- ----- 대해서 ----- -----. ② ----- ----- ----- ----- 재위탁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대해서 ----- -----.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모든 책

현행	개정안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을 진다. 제7조(운영비 지원) ----- ----- --- 범위----- -----.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 수탁자에게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 ----- 발생하였을 ----- -----.
1. 수탁자가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1. ----- --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 ----- -----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 ----- 인정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 ----- ----- 모두----- --.

현행	개정안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 ----- ----- -. 제11조(시행규칙) ----- 시행에 ----- ----- -----.